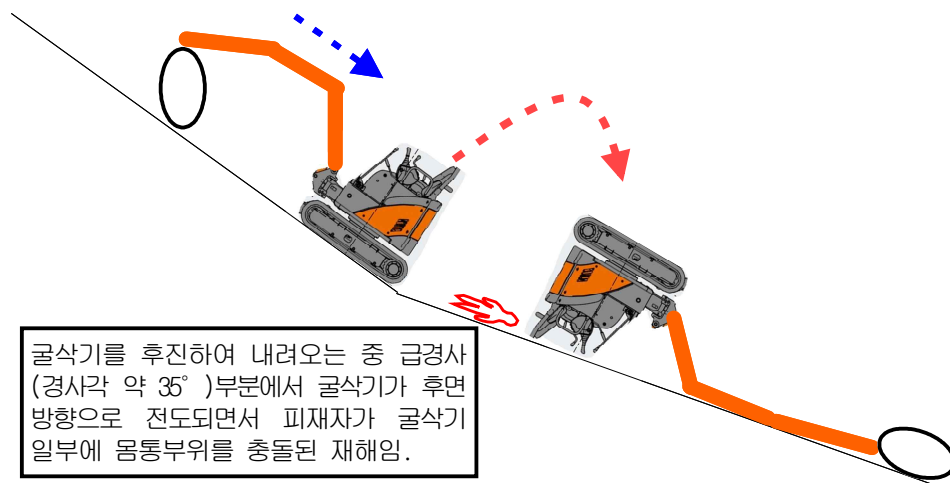


산 경사로에서 굴삭기로 자재 운반중 굴삭기 전도로 인한 사망

공 사 명	(주)OO OO오름 정비공사	발생일시	2018.04.13(금) 09:25경
재해형태	장비전도, 충돌	재해정도	사망 1명
소 재 지	제주시		산책로 정비 (식생매트, 안내판 정비 등)
재해개요	2018년 4월 13일(금) 09:25경 (주)OO OO오름 정비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 정상에 자재를 운반 후, 후진하여 경사길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굴삭기가 전도되면서 피해자가 굴삭기 일부에 충돌되어, 병원 이송 후 사망한 재해임.		

재해상황도



안전대책

-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 등의 방지조치 실시

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급경사 구간 사면완화 작업(사면 토사 깎기·되메우기, 우회로 신설 등)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.

-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사용상 안전도 준수

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를 준수(자재 운반로 경사각 30° 이하에서만 사용)하여야 함.

안전대책	- 차량계 건설기계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준수 차량계 건설기계 중 굴삭기는 지반 굴착 작업이 주용도이고, 자재 운반로 경사 구간에서 굴삭기의 전도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, 굴삭기를 자재 운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, 안전성이 확보된 다른 작업방법의 선정이 필요함. -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구간의 지형·지반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며,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,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.
-------------	---